

문서번호		시행일자: 년 월 일		
발음: 해양수산부장관		보냄: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
제목: 평균단가 계산서(년도)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단가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
① 상호		② 허가(등록)번호		
③ 성명(대표자)		④ 생년월일		
⑤ 사업장 소재지		⑥ 생산구분	[]제조 []수입	
⑦ 해양심층수 구분		⑧ 판매 방법	[]통상판매 []특수판매	
구분 ⑨ 용량·용기규격별	⑩ 판매 단가	⑪ 판매량 (개수)	⑫ 판매금액 (원)	⑬ 특수판매 회사명
계				
ℓ				
ℓ				
ℓ				
ℓ				
ℓ				
ℓ				
ℓ				
붙임: 세금계산서 합계표				

※ 작성방법

1. 제조·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평균단가 계산서는 제조·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2. ⑦해양심층수 구분: 국내산·수입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⑧판매방법: 정상거래는 통상판매란에,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표기합니다.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란에 모두 표기합니다.
4. ⑨용량·용기규격별: 제품의 용량 및 용기규격별로 적고,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5. ⑩판매단가: 연간 총 판매금액(부가가치세와 부담금은 제외)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.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 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⑪판매량(개수): 연간 판매하는 양을 적습니다.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한 양을 적습니다.
7. ⑫판매금액(원): 연간 총판매금액(부가가치세와 부담금은 제외)을 기재합니다.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 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총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8. ⑬특수판매회사명: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의 명칭을 적습니다.
9. 붙임서류 중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두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·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.